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

<목 차>

1.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관리·보존 기준
규제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교육부	작성 자	이름	길경섭
	담당부서 (과)	학교폭력대책과		직급	교육연구사
	국장	이해숙		연락처	044-203-6976
	과장	김도형		이메일	ksdh0422@korea.kr

2024. 1. 3. 작성

학생 건강 정책 관

이 해 숙 이 해 숙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학교생활기록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관리·보존 기준 규제		
	2.규제 조문	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 제22조 제3항		
	3.위임법령	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기록 작성·관리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2024.01.10.~2024.01.22.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가입 필요성	○ ‘학교폭력대책위원회(총리 주재)’, 「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」 발표(‘23.4.12.) 따른 후속조치 이행		
	7.규제내용	○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·보존 기준 조정 -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'2년'에서 '4년'으로 연장 ※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는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		
	8.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피규제자 :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 조치를 받은 학생 ○ 이해관계자 : 학생 및 학부모		
	9.규제목표	유 형		인원수 또는 규모
		피규제자	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 조치를 받은 학생	2022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, 6호(출석정지) 3,055건, 7호(학급교체) 조치 742건, 8호(전학) 조치 832건
규제의 적정성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
	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해당 없음		
기타	12.일 물 설 정 여부	해당 없음		
	13. 우선허용· 사후 규제 적용여부	해당 없음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학교생활기록의 관리·보존 등) ① (생 략)	제22조(학교생활기록의 관리·보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.	② ----- 학교 폭력조치상황관리----- ----- ----- -----.
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.	③ ----- 학 교폭력조치상황관리에 기록된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---, ---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----- ----- ----- -.
1.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	1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: 졸업일로부터 2년
2.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	2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: 졸업일로부터 4년
3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	<삭 제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
- '23.4.12. 발표한 “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(국무총리 발표)”의 세부 과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보존기간 연장 추진
 -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'2년'에서 '4년'으로 연장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규제대안의 내용

규제대안1	대안명	학교생활기록상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·보존 기준 조정
	내용	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·보존 기준 조정 -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'2년'에서 '4년'으로 연장 ※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는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
규제대안2	대안명	해당없음
	내용	

○ 규제대안의 비교

구분	장점	단점
현행유지안	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·보존 기준 유지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안정성 유지	- 최근 학교폭력의 증가 및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 조치(6호 7호 8호) 사항 학생부 기재가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논란 발생 -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불복 절차(행정심판, 행정소송) 등을 통해 대입시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소지 존재
규제대안1	-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생부 기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에 기여 6호~7호 조치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을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개선 여지 기회 제공	
규제대안2	해당없음	

○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학생부 기재가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,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'2년'에서 '4년'으로 연장 필요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일시 · 장소 · 방법	제시의견	조치결과
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	'23.3.23. /전북대 /대면회의	- 지속적·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등 중대한 사안은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등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	
국회 (당정협의)	'23.4.5. /국회 당정협의 /대면회의	-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'일방·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'을 적용하여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 강화 필요 -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 기간 연장 필요	
학교폭력 업무담당자, 변호사 등	'23.5.15.~16. /서울 호텔나루 /대면회의	-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,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※ 행정심판 건수 : ('20) 480건 → ('21) 751건 → ('22) 889건 ※ 행정소송 건수 : ('20) 111건 → ('21) 211건 → ('22) 265건 -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기간 조정은 학생 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음	

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(학생·학부모·교원)	'23.3.21. /국회 /정책토론회	-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 대처가 필요하며 생 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 및 조치사항 대입 전형 반영 방안 검토 필요 - 가해학생 조치 강화, 조치 결과 학생부 기재에 대한 학생의 효과성과 주요도 인식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 정책에 비해 높음 (학생·학부모 의견) - 가해학생 조치 중 학생부 기재에 대한 교원의 중요도 인식은 2013년에는 낮았 으나, 이후 높아져 2015년 에는 학생보다도 높았음 (교원)	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3. 규제목표

-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의 학교
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'2년'에서 '4년'으로 연장하여,
-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생부 기재가 그 역할을
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에 기여

※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는 기존과 동일하게 졸업 직전 심의를
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 유지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1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 사항 기록 보존기간은
현행대로 유지하고, 비교적 중대한 조치인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
8호(전학) 조치의 보존기간 연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
적절한 규제로 판단됨

- 특히,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하도록 하여 개선의 여지 반영 기회를 유지하였음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
o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- 해당사항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- 해당사항 없음

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	해당 여부
(A)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	해당 없음
(B)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	해당 없음
(C)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	해당 없음
(D)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	해당 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- 해당사항 없음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- 해당사항 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- 학교생활기록부 기재·관리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존속기한 미설정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- 해당사항 없음

○ 타법사례

- 해당사항 없음

III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동 규제는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생부 기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가해학생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 조치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,
-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시 삭제 가능하도록 하여 개선의 여지 반영 기회를 유지하였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현행 행정인력으로 집행 가능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현행 예산으로 집행 가능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: '23.4.12.
-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강화를 위한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(안) 결재 : '23.12.27.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('23.1.10.~1.22. 예정)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('22.1.10.~1.22. 예정)

2. 향후 평가계획

-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생부 기재 역할 강화를 위해 가해학생 조치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 조치에 대한 관리·보존 기준을 설정하고,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 훈령)을 개정하여 학교에서 가해학생 조치기록을 작성·관리하도록 시행
- 피규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수용도 확보 및 행정적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초·중등교육법시행규칙 개정·공포 후 현장에 충분히 안내

3. 종합결론

-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6호(출석정지), 7호(학급교체), 8호(전학) 조치 학생부 기록을 4년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아울러, 피규제자 및 이해 관계자의 수용도 확보 및 행정적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·공포 후 현장에 충분히 안내